

#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2,999,502	10,589,985
일반회계	334,506,192	10,035,186
특별회계	18,493,310	554,799
기타특별회계	18,493,310	554,79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8,987	15,270
주차장 특별회계	10,382,022	311,46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67,350	29,021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500,000	45,000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0,600	10,51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4,784,351	143,531

제 2 조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제 4 조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 5 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490,535천원(일반 3,345,061천원, 재해·재난목적 10,145,47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